

2024년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

1. 제안이유

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대표이사의 책임경영 이행과 금천일자리주식회사의 경영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2. 추진근거

- 가.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, 제28조
- 나.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~11조, 제16조

3. 주요내용

가. 평가 대상 : 금천일자리주식회사(기관, 대표이사)

나. 평가 기간 : 2023. 1. 1.~2023. 12. 31.

다. 평가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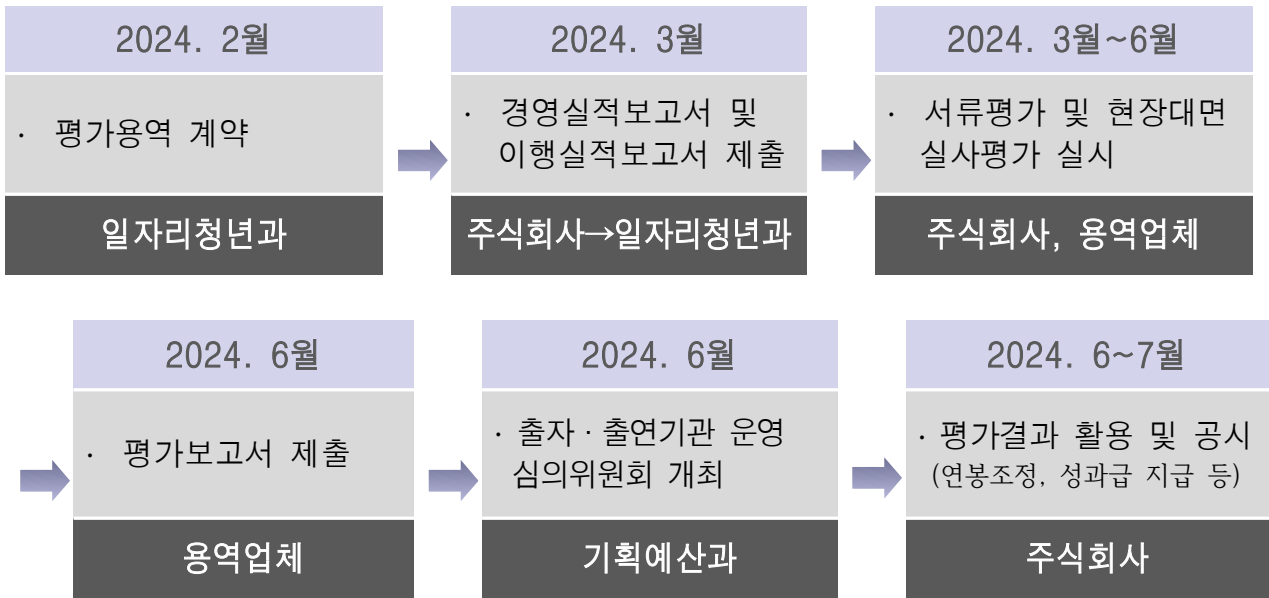
- 1) 기관 경영실적 평가(2023년도 실적)
- 2) 대표이사 성과계약 이행 평가(2023년도 실적)

라. 평가 방법 : 외부 전문기관 용역(수의계약)

- 1) 용역기간 : 2024. 2월~6월(약 5개월)
- 2) 소요예산 : 13,000천원(구비)

마. 평가결과 활용 : 대표이사 연봉 인상률, 성과급 지급 근거로 활용

4. 추진일정



5. 참고사항

가. 금천일자리주식회사 「기관」 경영평가 지표(안) - [붙임1]

나. 금천일자리주식회사 「대표이사」 성과평가 지표 - [붙임2]

다. 관계 법령 - [붙임3]

- 1)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, 제28조
- 2)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~11조, 제16조

[붙임1]

금천일자리주식회사 「기관」 경영평가 지표(안)

평가영역	평가부문	평가지표	배점(점)		
			계	정성	정량
I. 경영관리 (50점)	리더십 (15점)	경영층의 리더십	8	8	-
		전략경영	7	5	2
	경영시스템 (15점)	조직·인사관리	6	6	-
		재무관리	9	5	4
	일자리 확대 (5점)	일자리 창출 및 일·가정 양립	5	5	-
	사회적 책임 (15점)	소통 및 참여	4	3	1
		윤리경영	2	2	-
		인권경영	2	2	-
		재난·안전관리	4	3	1
		지역상생발전	3	2	1
II. 경영성과 (50점)	주요사업 (15점)	기관 고유사업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정도	5	5	-
		성과관리를 통한 일자리 창출 성과	10	6	4
	수익성 (8점)	사업수익목표 달성도	4	-	4
		자기자본이익률	4	-	4
	안정성 (5점)	금융부채비율	5	-	5
	생산성 (7점)	고용창출 성과목표 달성도	4	-	4
		인당 당기순이익	3	-	3
	성장성 (5점)	매출액증가율	5	-	5
	고객만족성과 (10점)	고객만족도	10	-	10
	합 계			100	52

※ 2024년 행정안전부 「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」 확인 후 우리구 정책 방향 및 사업실정에 맞는 지표로 조정 예정

[붙임2]

금천일자리주식회사 「대표이사」 성과평가 지표

성과목표	평가지표(세부 추진사항)	배점(점)
1. 기관 경영평가 결과	기관 경영평가 결과	80
2. 사업 다각화를 위한 노력	소 계	12
	가. 기존 사업 확장을 위한 노력	4
	나.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한 노력	4
	다. 민간기관과의 계약 확대를 위한 노력	4
3. 사회적 약자 일자리 창출 노력	소 계	8
	가. 장애인,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 일자리 창출 노력	4
	나. 장애인,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 일자리 창출 실적	4
총 점		100

※ 2023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 성과계약서 기준

관계법령

▣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11조(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·출연 기관의 장(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)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,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28조(경영실적의 평가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 1.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,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)이 해당 기관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
 2.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인 기관
 3.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에서 100분의 25 미만으로 변동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
2. 조직·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
3. 전년도 결산서
4. 최근 3년간 경영실적
5.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
6.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▣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0조(평가의 종류)

구청장은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.

1.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
2.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
3.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

제11조(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)

-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1일(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)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③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구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

있다. 다만,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.

1. 정부·서울특별시·구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
2.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
3.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6조(평가의 활용)

- ① 구청장이 제10조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계획과 결과 등을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구청장은 제10조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·출연 기관별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.
- ③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.